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06384 손해배상(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정 담당변호사 방수란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주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현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우

4.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장현준

5.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정

6.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준, 윤혜인

변 론 종 결 2026. 4. 28.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6.부터,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6.부터,
다. 피고 주식회사 D는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6.부터,
라. 피고 주식회사 E는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6.부터,
마. 피고 주식회사 F는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6.부터,
바. 피고 주식회사 G는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5.부터,
각 2026. 7. 9.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E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G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¹⁾.

1) 원고는 2025.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G에 대하여 20,000,000원을 구하였고, 이후 2026. 1.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G에 대한 청구금액을 12,000,000원으로 감축하였으나, 피고 G는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하였다(피고 G 2026. 1. 20.자 준비서면 참조). 청구취지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데, 피고 G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20,000,000원으로 유지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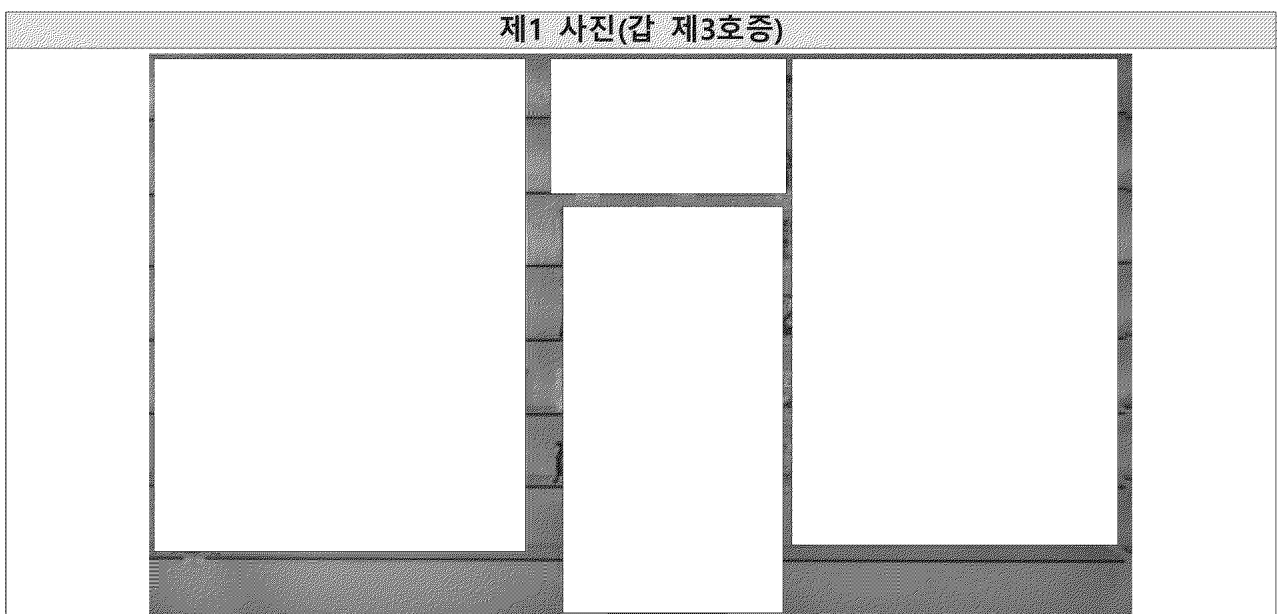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서 다수의 언론과 협업하여 사진 촬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들은 각 국내에서 방송사업,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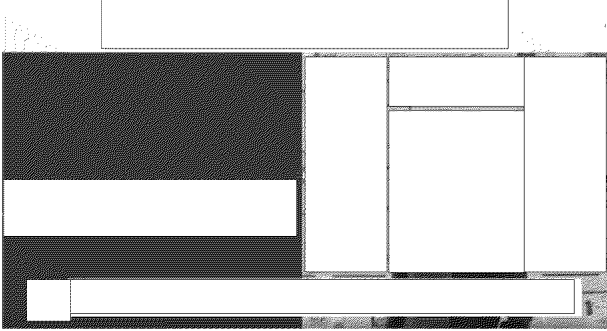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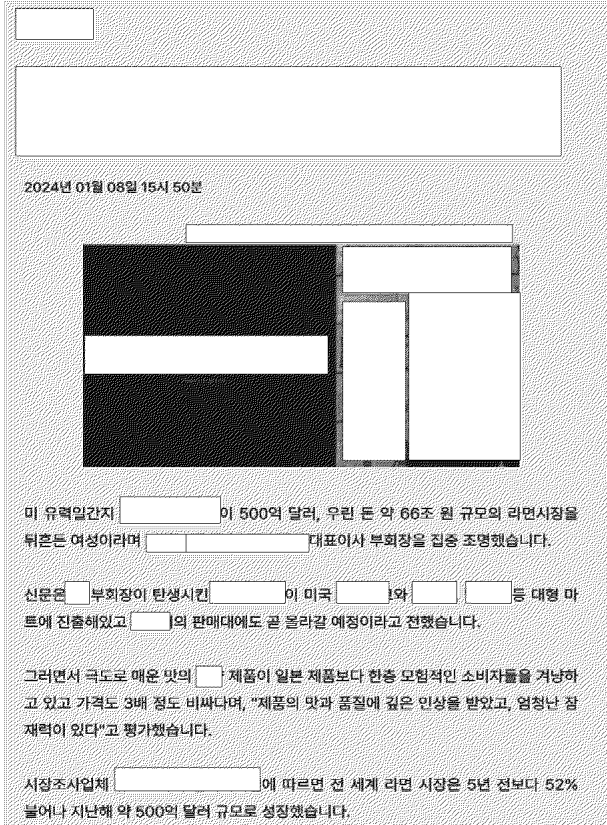
나. 원고의 제1 사진 촬영 및 피고들의 사용

1) 원고는 2024. 1. 6. 미국 언론사인 H언론의 의뢰를 받아 별지 1 제1항 기재 사진(이하 '제1 사진'이라 한다, 갑 제3호증)을 촬영하였고, 그 무렵 H언론에게 제1 사진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였으며, H언론은 2024. 1. 8. "I"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제1 기사'라 한다)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며 위 사진을 사용하였다(갑 제4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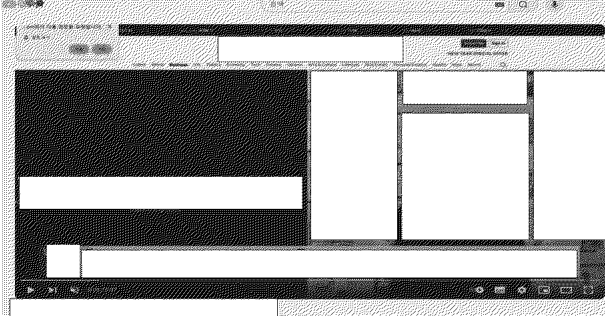


2) 피고 B은, ① 2024. 1. 8. 제1 기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뉴스를 방영함으로써, ② 같은 날 위 뉴스의 영상 및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인터넷주소 2 생략)와 포털사이트인 AH·AI·AJ에 게시함으로써, ③ 같은 날 위 뉴스 영상을 피고 B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함으로써, 6회에 걸쳐 제1 사진을 사용하였다 (갑 제11, 40호증). 피고 B이 제1 사진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 [피고 B]의 '제1 사진 사용내역'란 내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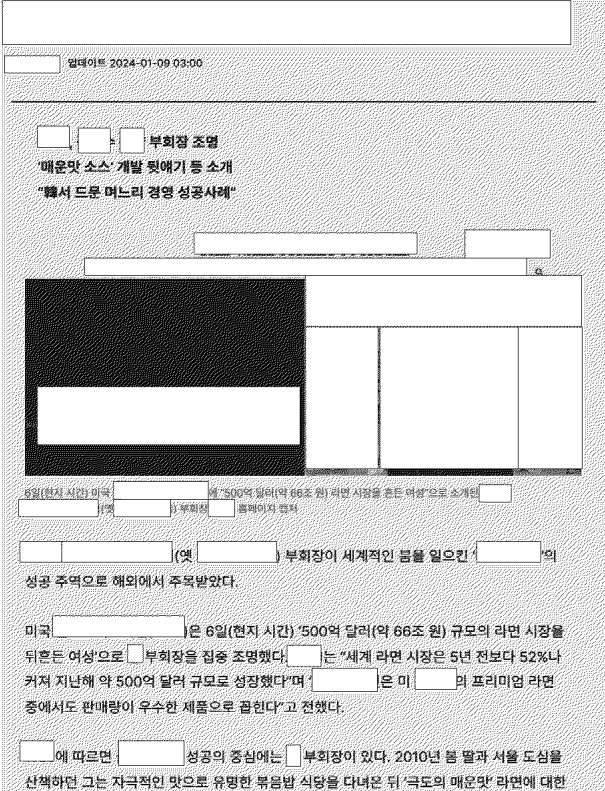
피고 B의 사용행위	뉴스 영상	
	온라인 기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5

		지난해 출시 60년을 맞은 우리나라 라면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역대 최대인 1조 2천억 원어치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튜브 영상	

3) 피고 F는, ① 2024. 1. 9. 제1 기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국문 및 영문 기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에 게시함으로써, ② 같은 날 일간지에 위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3회에 걸쳐 제1 사진을 사용하였다(갑 제21호증). 피고 F가 제1 사진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 [피고 F]의 '제1 사진 사용내역'란 내용과 같다.

피고 F의 사용행위	온라인 기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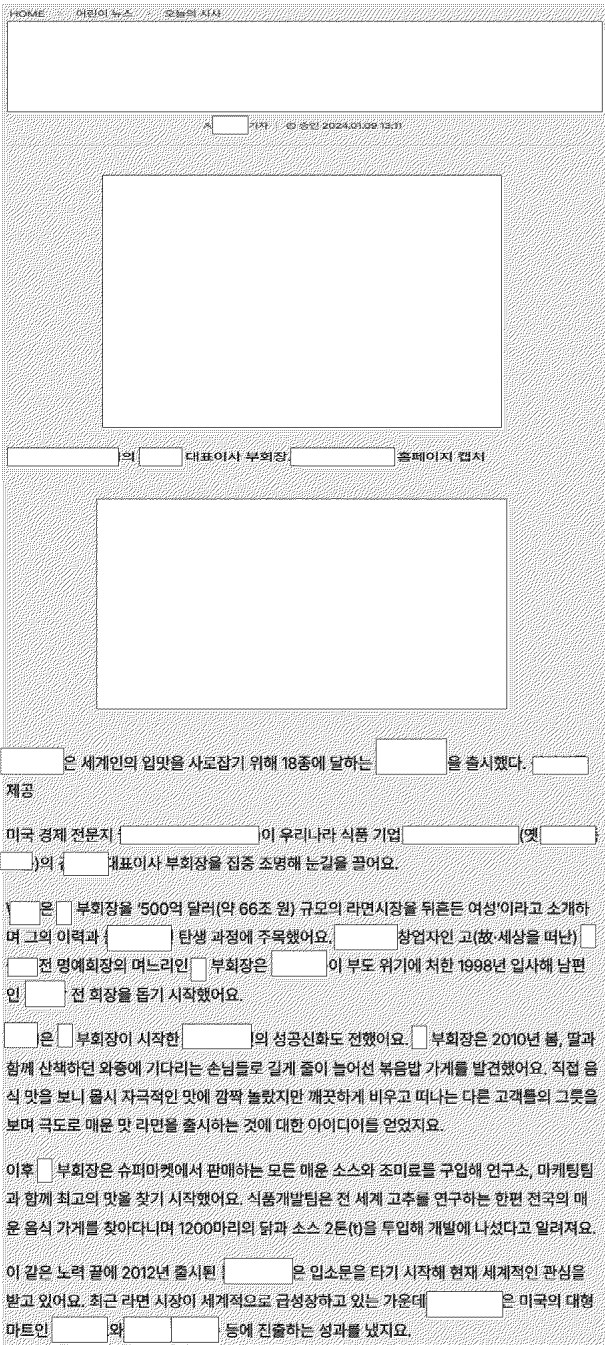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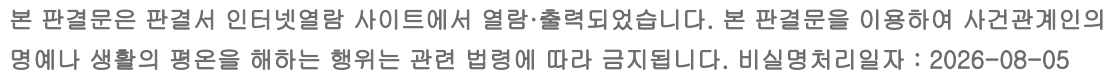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5

		확신을 가졌다. 곧바로 슈퍼마켓으로 뛰어간 [] 부회장은 모든 매운 소스와 조미료를 3개씩 사서 연구소와 마케팅팀으로 보낸 뒤 나머지는 직접 집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닭 1200마리와 소스 2을 투입하며 몇 개월 동안 노력한 끝에 최적의 맛을 찾아냈다. [] 부회장은 옛 [] 창업자인 고 [] 전 명예회장의 며느리다. []이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맞아 1998년 입사에 남편인 [] 전 회장을 돕기 시작했다. 기업 경영 분석 업체 []의 [] 대표는 []에 " []과 [] 등 대다수 한국 기업은 남성 상속자들이 이끌고 있는데, [] 부회장은 며느리로서 기업을 회생시켜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온라인 영문 기사	[] Posted January 19, 2024 08:00 Updated January 19, 2024 08:00 Headline News [] Vice chairman of [] has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a pivotal figure in the success of the [] Korean Hot Spicy Chicken Ste-Fried Ramyun Noodles, leading to a global phenomenon. On Saturday (local time), the Wall Street Journal [] spotlighted Vice Chairman [] as "the woman who shaking up the \$50 billion ramyun market," [] reported. "The global ramyun market witnessed a 52% growth compared to five years ago, reaching approximately \$50 billion last year," and further noted, [] Korean Hot Spicy Chicken Ste-Fried Ramyun Noodles is recognized as the best-selling product among [] is premium ramyun offerings. According to [] Vice Chairman [] is at the forefront of the success of [] Korean Hot Spicy Chicken Ste-Fried Ramyun Noodles. During a stroll through downtown Seoul with her daughter in the spring of 2010, she became intrigued by the "astronomically spicy" ramyun after visiting a fried rice restaurant renowned for its spicy flavors. Vice Chairman [] promptly headed to the supermarket, purchased three of each hot sauce and seasoning, sent them to the research lab and marketing team, and embarked on personal research at home. After several months of dedicated effort, involving 1,200 chickens and 2 tons of sauce, she discovered the optimal taste for the product. Vice Chairman [] the daughter-in-law of the late former Honorary Chairman [] the founder of [] in 1998, when [] faced bankruptcy amid the foreign exchange crisis, she joined the company and started assisting her husband. Former Chairman [] chief of CEO Score, a corporate management analysis company, remarked to the [] "Most Korean companies, such as [] and [], are led by male heirs, but Vice Chairman [] is exceptional in revitalizing the company as a daughter-in-law." []
	일간지 기사	[] [] 부회장 조영 "매운맛 소스" 개발 뒷얘기 등 소개 "韓서 드문 며느리 경영 성공사례" [] [] 부회장이 서거적인 불을 일으킨 []의 성 공 주역으로 재조명되어 주목받았다. 미국 []은 8일(현지 시간) "50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의 라면 시장을 뒤흔든 여성"으로 [] 부회장을 집중 조명했다. []는 "세계 라면 시장은 5년 전보다 52%나 커져 지난해 약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며 "[] 연은 미 []의 프리미엄 라면 중에서도 판매량이 우수한 제품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에 따르면 [] 상품의 중심에는 [] 부회장이 있다. 2010년 봄 딸과 서울 도심을 산책하던 그는 자극적인 맛으로 유명한 복음방 식당을 다룬 뒤 "극도의 매운맛" 라면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곧바로 슈퍼마켓으로 뛰어간 [] 부회장은 모든 매운 소스와 조미료를 3개씩 사서 연구소와 마케팅팀으로 보낸 뒤 나머지는 직 6일(현지 시간) 미국 []에 "500억 달러(약 66조 원) 라면 시장을 뒤흔든 여성"으로 소개된 [](비명) [] 부회장, [] 홈페이지 게재 점 집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닭 1200마리와 소스 2을 투입하며 몇 개월 동안 노력한 끝에 최적의 맛을 찾아냈다. [] 부회장은 옛 [] 창업자인 고 [] 전 명예회장의 며느리다. []이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맞아 1998년 입사에 남편인 [] 전 회장을 돕기 시작했다. 기업 경영 분석 업체 []의 [] 대표는 []에 " []과 [] 등 대다수 한국 기업은 남성 상속자들이 이끌고 있는데, [] 부회장은 며느리로서 기업을 회생시켜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 기사



4) 피고 G는 2024. 1. 9. 제1 기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4 생략)와 발행하는 일간지에 게시함으로써, 2회에 걸쳐 제1 사진을 사용하였다(갑 제22호증). 피고 G가 제1 사진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 [피고 J]의 '제1 사진 사용내역'란 내용과 같다.

피고 G의 사용행위	온라인 기사²⁾	
-----------------------	--------------------------------	---

다. 원고의 제2 사진 촬영 및 피고들의 사용

제2 사진(갑 제8호증)



- 9 -



차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뉴스를 방영함으로써, ② 같은 날 위 뉴스 영상 및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와 포털사이트인 AH·AI·AJ에 게시함으로써, ③ 위 뉴스 영상을 피고 B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함으로써, 18회에 걸쳐 제2 사진을 사용하였다(갑 제12, 13, 14-1, 14-3, 41, 42, 43 호증). 피고 B이 제2 사진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 [피고 B]의 '제2 사진 사용내역'란 내용과 같다.³⁾

피고 B의 사용행위	뉴스 영상	
	온라인 기사	

3)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제2 사진을 피고 B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6 생략)에서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2 사진이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14-2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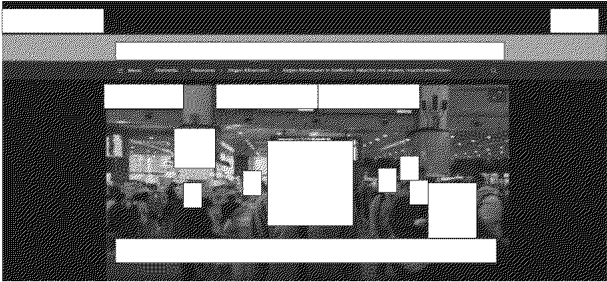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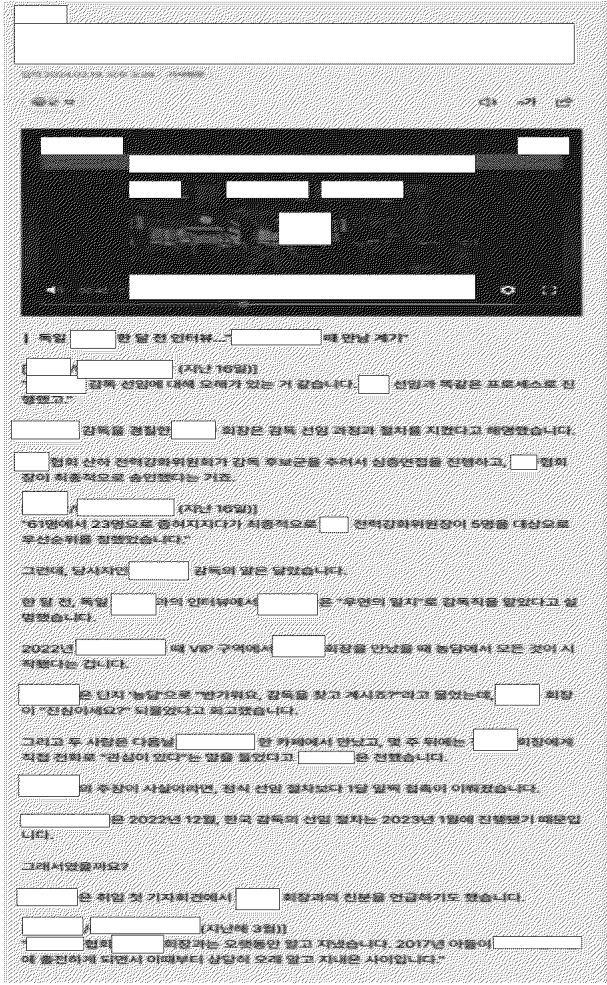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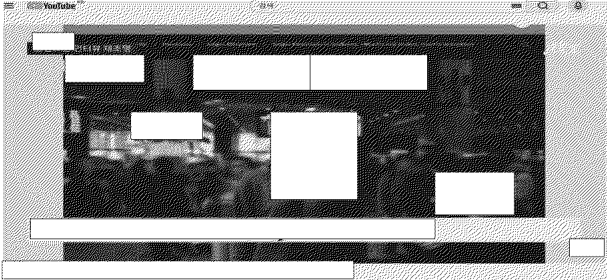
		[]/[] 감독·대회 때 [] 회장과 두 번 정도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회와 관련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재임 기간 끊임없이 지적했던 채택근무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실렸습니다. []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요일마다 아마추어 클럽에서 축구를 했는데, 모든 것이 비공식적인 미국 생활을 즐겼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파주트레이닝센터는 숙박 시설이 낡고,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서 싫어했다고 []은 전했습니다. []과의 개인적 친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 회장은 [] 감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 []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여러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했죠] 형식적인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 감독과의 '잘못된 만남'에서 어떤 점이 문제의 소지가 됐고, 무엇이 화를 키웠는지, 이제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유튜브 영상	

3) 피고 C는, ① 2024. 2. 19. 제2 기사를 근거로 M 대표팀의 N 전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뉴스를 방영함으로써, ② 같은 날 위 뉴스 영상 및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를 포털사이트인 AH·AI·AJ에 게시함으로써, ③ 같은 날 위 뉴스 영상을 피고 C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함으로써, 10회에 걸쳐 제2 사진을 사용하였다(갑 제15-1, 15-3, 16-1, 44, 45호증).⁴⁾ 피고 C가 제2 사진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 [피고 C]의 '제2 사진 사용내역'란 내용과 같다.

4)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제2 사진을 피고 C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7 생략)에서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2 사진이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15-2, 16-2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5

피고 C의 사용행위	뉴스 영상	
	온라인 기사	
	유튜브 영상	

4) 피고 D는, ① 2024. 2. 19. 제2 기사를 근거로 M 대표팀의 N 전 감독 선임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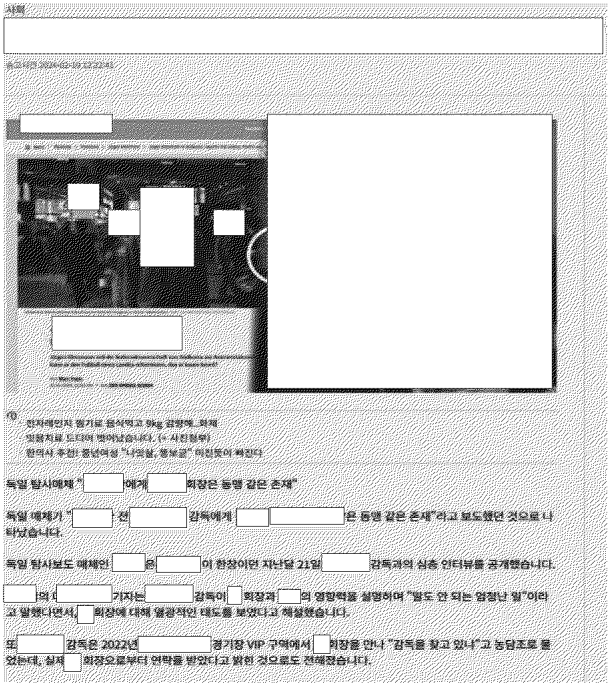
차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뉴스 영상을 방영함으로써, ② 같은 날 위 뉴스의 영상으로 구성된 기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8 생략)와 포털사이트인 AH·AI·AJ에 게시함으로써, ③ 위 뉴스 영상을 피고 D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함으로써, 9회에 걸쳐 제2 사진을 사용하였다(갑 제17, 46호증). 피고 D가 제2 사진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 [피고 D]의 '제2 사진 사용내역'란 내용과 같다.

피고 D의 사용행위	뉴스 영상 캡처	
-----------------------	-------------	--

5) 피고 E는, ① 2024. 2. 19. 제2 기사를 근거로 M 대표팀의 전 감독인 N의 감독선임 절차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뉴스를 방영함으로써, ② 같은 날 위 뉴스 영상 및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9 생략), 포털사이트인 AH, AI, AJ에 게시함으로써, ③ 같은 날 위 뉴스 영상을 피고 E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함으로써, 15회에 걸쳐 제2 사진을 사용하였다(갑 제18, 19, 20, 47, 48호증). 피고 E가 제2 사진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 [피고 E]의 '제2 사진 사용내역'란 내용과 같다.

피고 E의 사용행위	뉴스 영상	
-----------------------	-------	--



	온라인 기사	
	유튜브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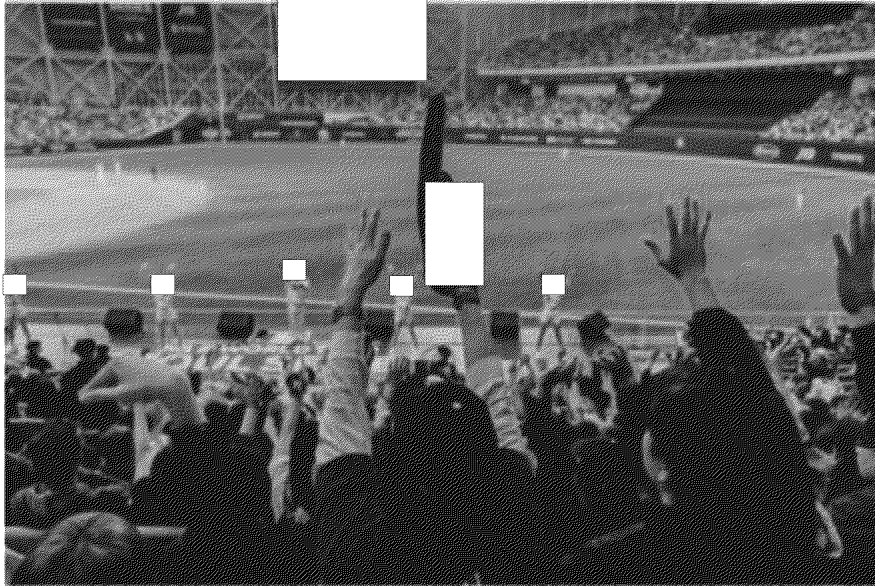
라. 원고의 제3, 4사진 촬영 및 피고 G의 사용

1) 원고는 2016. 12. 9. 미국 언론사인 O언론과 'O언론가 원고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원고는 사진 촬영을 하며, 작업물에 대하여 O언론과 원고가 공동저작권을 갖고, O언론가 작업물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수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프리랜서 사진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29호증),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별지 1 제3, 4항 사진을 촬영하였고(이하 각 '제3 사진', '제4 사진'이라 한다, 갑 제32, 33호증), O언론은 그 무렵 "P"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제3 기사'라 한다)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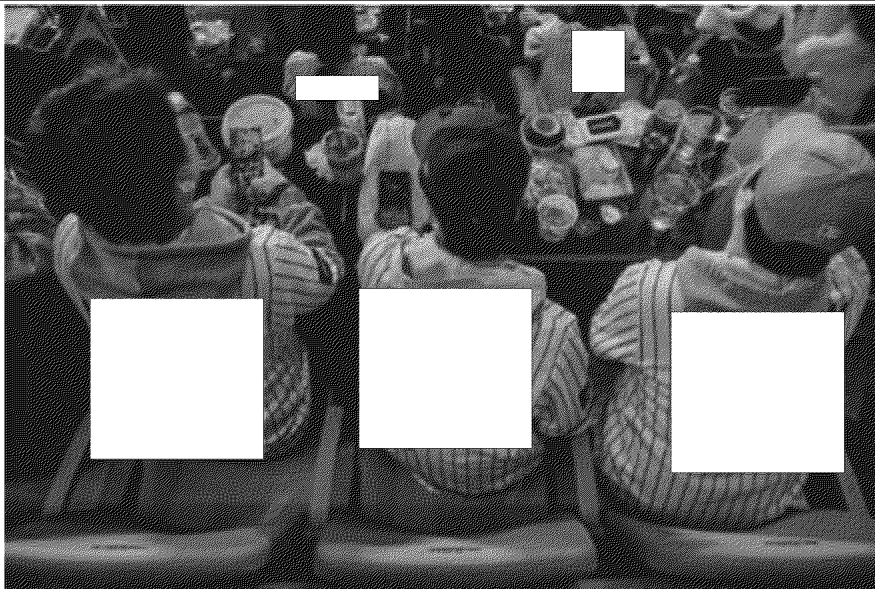


소 10 생략)에 게시하며 위 각 사진을 사용하였다.

제3 사진(갑 제32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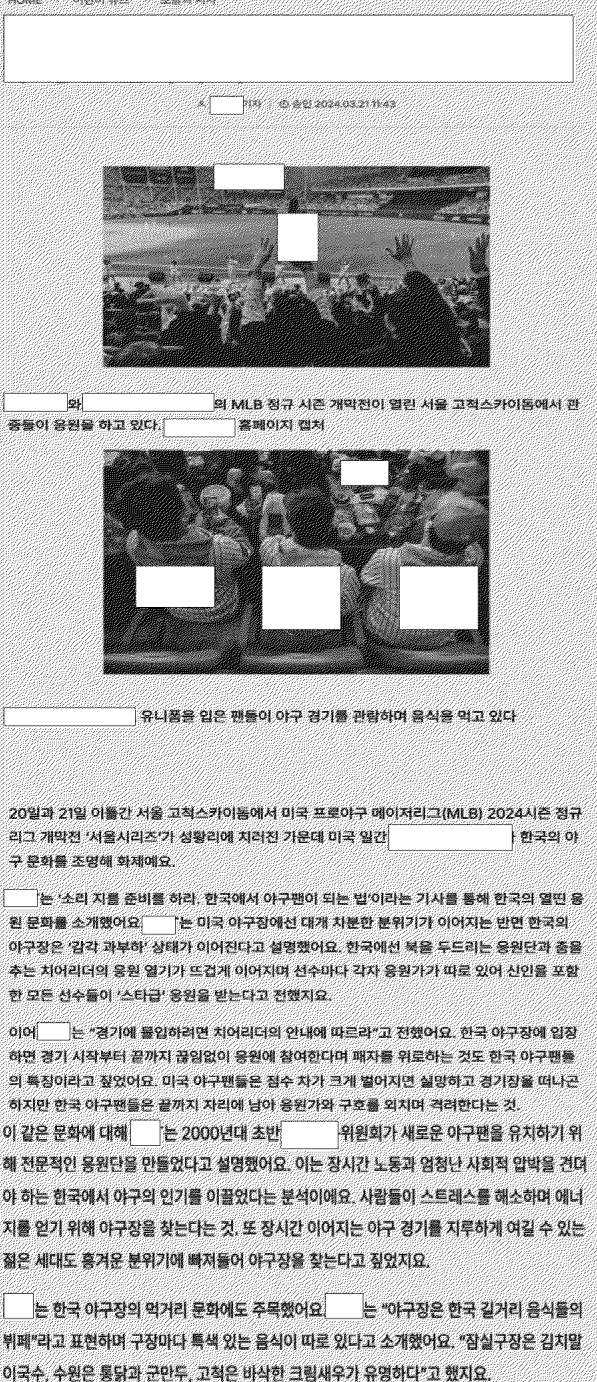
제4 사진(갑 제33호증)



2) 피고 G는 2024. 3. 21. 제3 기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4 생략)에 게시함으로써, 각 1회에 걸쳐 제3, 4 사진을 사용하였다(갑 제34호증). 피고 G가 제3, 4 사진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 [피고



G]의 '제3, 4 사진 사용내역'란 내용과 같다.

피고 G의 사용행위	온라인 기사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11 내지 22, 29, 32, 33, 34, 40 내지 48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⁵⁾

1)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제1 내지 4 사진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인데, 피고 B은 제1, 2 사진을 사용하여, 피고 C, D, E는 제2 사진을 사용하여, 피고 F는 제1 사진을 사용하여, 피고 G는 제1, 3, 4 사진을 사용하여 뉴스 영상을 방영하거나 위 뉴스 영상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사진에 관한 저작재산권(피고들: 복제권, 공중송신권, 피고 F, G: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나) 또한 피고들은 제1 내지 4 사진을 사용하며 저작자인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 B, F, G는 제1 사진(피고 B, F, G) 또는 제2 사진(피고 B)을 사용하며 사진의 크기와 색상 등을 변형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위 각 사진에 관한 저작인격권(피고들: 성명표시권, 피고 B, F, G: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또는 제126조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들의 침해행위별 손해액 산정 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각 선택적 병합 관계이고,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단순 병합 관계이며⁶⁾,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단순 병합 관계이다].

5) 원고는 주위적으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순서를 정한 선택적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6) 원고는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선택적 병합 관계라고 주장하나, 양 청구의 성질상 단순 병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1 내지 4 사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고의 성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제1 내지 4 사진을 사용하여 뉴스 영상을 방영함으로써, 위 뉴스 영상을 내용으로 한 기사를 제작·발행함으로써, 위 뉴스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이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저작물성 부존재: 피고들의 주장

제1 내지 4 사진은 인터뷰 대상자의 모습이나 전형적인 야구 경기장의 모습을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여 누가 그 대상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1 내지 4 사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저작권법에 기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제1 내지 4 사진을 보도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1 내지 4 사진이 포함된 기사의 출처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제1 내지 4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들은 제1 내지 4 사진을 보도 및 비평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한 참고자



료로 사용하였고, 피고들의 뉴스 영상이나 기사가 제1 내지 4 사진의 수요를 감소하게 하거나 대체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제1 내지 4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F의 주장

피고 F는 제1, 2 기사를 캡처하는 과정에서 제1, 2 사진을 포함하였고, 이는 제1, 2 사진이 제1, 2 기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F의 위와 같은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부수적 복제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 F가 원고의 제1, 2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부존재: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제1 내지 4 사진이 포함된 기사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원고가 저작권자임이 기재된 제1, 2 기사의 내용을 뉴스 영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제1 내지 4 사진에 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B, F, G는 H언론이 변경한 제1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 B이 제 2 사진을 사용하면서 사진의 크기나 색상을 변경한 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의 사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제1, 2 사진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내지 4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내지 4 사진은 촬영자인 원고의 개성과 창조성이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가) 제1 사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H언론로부터 'Q의 R 부회장에 관한 인터뷰 기사에 사용될 사진을 촬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R 부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부각하기 위하여 Q의 다양한 라면 상품이 진열된 모습을 배경으로 선택하였으며, R 부회장과 배경 사이의 거리와 높이를 조절하여 서로 조화되는 구도를 형성하였고, 조명과 빛의 노출을 조절하여 배경의 색채와 R 부회장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표현되도록 하였으며, 배경 패턴이 왜곡되지 않는 카메라 위치와 각도를 선택하였고, R 부회장이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을 선택하여 셔터찬스를 포착하였으며, 현상 및 인화 과정에서 전체적인 색채의 톤과 선명도를 조절하였다.

나) 제2 사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K언론로부터 'M 국가대표팀의 감독이었던 N에 관한 인터뷰 기사에 사용될 사진을 촬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기중심



적이라는 한국 내의 비판 여론을 부각하기 위하여 대형 교통시설의 한복판에서 정지한 주 피사체(N)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주변 인물들을 대비하는 모습으로 피사체를 선택 하였으며, 전면에 N을 배치하여 시각적 중심을 형성하고 후면에 대형 안내판·상점· 이동하는 군중 등으로 구도를 설계하였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여 후면 군중은 잔상이 남는 모습으로 촬영되게 하였으며, 배경 디지털 패널과 인물 사이에 빛 노출 균형을 확보하였고, 군중의 흐름을 담아낼 수 있으면서 인물의 시선방향에서 촬영할 수 있게 카메라 위치와 각도를 선택하였으며, N은 화면 중심에 정지하여 있으면서도 주변 인물들이 이동하며 N을 가리지 않는 순간을 선택하여 셔터찬스를 포착하였고, 현상 및 인화 과정에서 인물은 선명도를 유지하면서도 군중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흐림 효과를 유지하게 하였다.

다) 제3 사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O언론로부터 '한국의 야구 응원문화에 관한 기사에 사용될 사진을 촬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국의 역동적인 야구 응원 문화를 부각하기 위하여 응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중들을 피사체로 선택하여 원경에는 관중들의 손 사이에서 응원을 주도하는 치어리더가 나타날 수 있게 피사체를 선택하였으며, 치어리더와 그 뒤로 펼쳐진 야구장·손을 위로 뻗고 응원을 따라하는 다수의 관중들·S 응원 상품을 착용한 관중의 삼중 층 구조로 구도를 설계하였고, 경기장 조명으로 인하여 밝은 경기장 부분과 응원하는 관중의 색감을 균형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절하였으며, 군중의 움직임과 경기장의 공간감을 담을 수 있는 카메라 각도를 선택하였고, 관중들이 치어리더의 응원을 따라하기 위하여 팔을 위로 뻗으면서도 S 응원 상품을 착용한 관중이 응원 상품이 잘 보이도록 손을 뻗고 원경의 치어리더가 관중들의 팔에 가리지 않는 순간을 선택하여 셔터찬스를 포착하였다.



라) 제4 사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O언론로부터 '한국의 야구 응원문화에 관한 기사에 사용될 사진을 촬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촬영 장소가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T 선수의 홈구장이었다는 특성을 부각하면서도 여러 음식을 즐기는 한국의 야구 응원문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T 선수의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이 여러 음식을 즐기며 야구를 관람하는 모습을 피사체로 선택하였으며, 먹거리와 T 선수의 유니폼을 함께 강조할 수 있도록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를 설정하였고, 관중들이 입은 유니폼의 모습과 음식의 모습을 모두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빛의 방향과 양, 빛 노출 정도를 조절하였으며, 관중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면서도 서로의 팔과 스마트폰이 겹치지 않고 그 앞에 위치한 음식의 모습이 안정적인 형태로 배열될 수 있는 순간을 선택하여 셔터찬스를 포착하였다.

나. 제1 내지 4 사진의 저작권자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1, 2 사진에 관한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O언론가 제3, 4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50%씩 공동으로 갖고, 원고가 제3, 4 사진에 관한 저작인격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침해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① 제1 내지 4 사진이 포함된 뉴스 영상을 방영하거나, ② 위 뉴스 영상이 포함된 기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③ 위 뉴스 영상을 자신들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하였다(이하 ① 내지 ③항 기재 행위를 '피고들 사용행위'라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들 사용행



위는 제1 내지 4 사진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피고들), 배포권(피고 F, G)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저작권법 제28조에 기한 저작권재산권 제한 주장

(1) 관련 법리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7) 피고 F, G가 각 제1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일간지에 게시한 행위에 관한 것이다.



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사용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들은 방송사업 또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고들 사용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구독료·광고료 등의 수익을 얻으므로, 피고들 사용행위는 영리적인 성격을 갖는다.

(나)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 사용행위의 경우 아래 ①항과 같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②항과 같이 인용의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보도, 비평 등의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그 인용의 목적과 정도를 벗어나서 사용하면 이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제1 내지 3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쟁점을 비평하기 위하여 피고들 사용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제1 내지 3 기사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으므로, 위 기사들에 첨부된 제1 내지 4 사진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제1 내지 3 기사를 그대로 보여주거나, 위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제1 내지 4 사진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들의 사용행위는 인용의 목적과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보도나 비평의 목적으로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된 부분이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표시해주어야 비로소 그 인용의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피고들은 제1 내지 3 기사를 인용하며 그 기사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여 인용하였으므로, 피고들도 위와 같은 관행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 성명표시권 침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 C, F, G는 제1 내지 4 사진의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의 사용행위를 접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의 뉴스 영상 또는 기사에 삽입된 제1 내지 4 사진도 위 피고들의 저작물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그 저작권자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위 피고들의 사용행위는 우리 사회 일반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 수준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기한 저작재산권 제한 주장

(1) 관련 법리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1항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⁸⁾ 현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해당한다.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포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사용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피고들 사용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구독료·광고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 사용행위는 영리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제1 내지 4 사진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본래 제1 내지 4 사진의 용도였던 보도사진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창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1 내지 4 사진은 기사에 사용되기 위한 사진저작물로서 이를 접하는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감성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 사진이 사용된 기사의 성격이 어떠한가와 별개로, 단순히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1 내지 4 사진은 뉴스 영상, 기사, 유튜브 동영상의 시각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질적 비중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1 내지 4 사진을 사용하였다.

(라)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진들을 다양한 방송사·신문사에 판매하여 저작권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별다른 저작권료 지급 없이 제1 내지 4 사진을 사용한 행위는 위 사진들의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관행이 유지되는 경우 사진 저작물 사용허락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다) 피고 F의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기한 저작재산권 제한 주장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1, 2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캡처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사진촬영'에 해당한다거나 기사를 캡처하는 과정에서 제1, 2 사진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가) 피고 B, D, E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별지 2 기재 [피고 B]란 기재 행위, 피고 D는 별지 2 기재 [피고 D]란 행위, 피고 E는 별지 2 기재 [피고 E]란 행위를 하며 "Photography by U for H(제1 사진)" 또는 "Foto: U(제2 사진)"이라 표시한 점, ② 'U'은 원고의 이명인 점, ③ 뉴스 영상 및 신문 기사의 한정된 시간·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이에 포함된 사진의 저작권자 표시를 장시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D, E가 이 부분 사용행위를 통하여 원고의 제1, 2 저작물에 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 F, G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피고들이 제1 내지 4 기사를 사용하며 제1, 2, 3 기사를 발행한 외신의 이름을 표시한 사실, ② 하지만 피고 C가 별지 2 기재 [피고 C]란 기재 행위(제2 사진), 피고 F가 별지 2 기재 [피고 F]란 기재 행위(제1 사진), 피고 G가 별지 2 기재 [피고 G]란 기재 행위(제1, 3, 4 사진)를 하며 제1 내지 4 사진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는 않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들이 제1, 2, 3 기사의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1 내지 4 사진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C, F, G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제1 내지 4 사진에 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피고 F, G는 위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피고들은 언론사로서 제1, 3 기사에 사용된 사진의 저작권자가 위 기사의 저작권자와 상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제1 사진의 저작권자임이 제1 기사에 표시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F, G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제1, 3, 4 사진에 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C, F, G는 피고들 사용행위가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 D, E는 피고 C, F, G와 달리 방송 영상·신문 기사에 원고의 이명을 표시한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사용행위가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가) 관련 규정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



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의 경우,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이르지 않는 한 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B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B은 별지 2 기재 [피고 B]의 '제2 사진 사용내역' 중 순번 5, 8, 9, 10항 기재 행위를 하며 제2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고, 제2 사진 위에 자막을 삽입한 점, ② 통상 사진에 포함된 요소를 삭제, 추가하거나 크기·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작품 의도), 형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제2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고, 제2 사진 위에 자막을 삽입하는 것이 제2 사진을 사용하는데 있어 부득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별지 2 기재 [피고 B]의 '제2 사진 사용내역' 중 순번 5, 8, 9, 10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제2 사진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가)항 기재 행위 외에서 원고의 제1 사진 또는 제2 사진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F, G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H언론은 제1 사진을 제1 기사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진의 크기를 변경하였고, 피고 F, G는 H언론에 의하여 변경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점, ② H언론의 변경 행위를 피고 F, G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③ F가 제1 사진을 일간지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색상



을 일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색상 변경으로 그 사진에 표현된 원고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사진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 G가 제1 사진(피고 F, G) 또는 제3, 4 사진(피고 G)의 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별지 2 기재 각 피고별 '방송·기사 제목'란 방송을 방영하거나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같은 행 '침해 저작권'란 기재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 F, G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 내지 4 사진을 사용하며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피고 C: 제2 사진, 피고 F: 제1 사진, 피고 G: 제1, 3, 4 사진), 원고의 제1 내지 4 사진에 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별지 2 기재 [피고 B]의 '제2 사진 사용 내역' 중 순번 5, 8, 9, 10항 기재 행위를 하며 제2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고, 제2 사진 위에 자막을 삽입함으로써, 원고의 제2 사진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사진을 방송사 또는 신문사에 사용하게 할 경우 통상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피고들의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양한 방송사·신문사 등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저작물 사용허락 비용은 사용되는 유형·노출도 등에 다양하게 산정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1 내지 4 사진에 관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은 피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또는 배포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기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 52,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그 사용 유형 및 노출 정도에 따라 19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였던 점(갑 제52, 57호증), ② 피고들의 사진별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 횟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점, ③ 원고는 O언론과 함께 제3, 4사진의 저작재산권에 관하여 각



50% 지분을 갖는 공동저작권자인 점(갑 제29호증, O언론 프리랜스 계약서 제3조, 제6조), ④ 사진사용권 판매 회사인 V의 사진사용권 계산 방법에 의할 때, N을 촬영한 사진 저작물이 티비프로그램의 오프닝 화면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저작물 사용허락 비용은 미화 4,440\$(약 630만 원) 가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방송사·신문사가 동일한 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게시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해당 뉴스 방송·기사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대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들의 침해행위 경위·기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금을 12,000,000원, 피고 C의 손해배상금을 5,000,000원, 피고 D의 손해배상금을 4,000,000원, 피고 E의 손해배상금을 7,000,000원, 피고 F의 손해배상금을 2,000,000원, 피고 G의 손해배상금을 1,000,000원으로 정한다⁹⁾.

피고	사용 저작물	침해 행위 횟수	합계
피고 B	제1 사진	6회	24회
	제2 사진	18회	
피고 C	제2 사진	10회	10회
피고 D	제2 사진	9회	9회
피고 E	제2 사진	15회	15회
피고 F	제1 사진	3회	3회
피고 G	제1 사진	2회	4회
	제3 사진	1회	
	제4 사진	1회	

2)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9) 공중송신권 또는 배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공중송신권 또는 배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중송신권 또는 배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 침해의 기간, 침해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 건수, 침해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금을 2,000,000원, 피고 C의 손해배상금을 5,000,000원, 피고 F의 손해배상금을 2,000,000원, 피고 G의 손해배상금을 3,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손해배상금 14,000,000원(=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2,000,000원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원), 피고 C는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 피고 D는 손해배상금 4,000,000원, 피고 E는 손해배상금 7,000,000원, 피고 F는 손해배상금 4,000,000원(=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원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원), 피고 G는 손해배상금 4,000,000원(=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피고 B은 2024. 11. 16.부터, 피고 C는 2024. 11. 16.부터, 피고 D는 2024. 11. 16.부터, 피고 E는 2024. 12. 6.부터, 피고 F는 2024. 11. 16.부터, 피고 G는 2024. 11. 15.부터, 각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석

판사 이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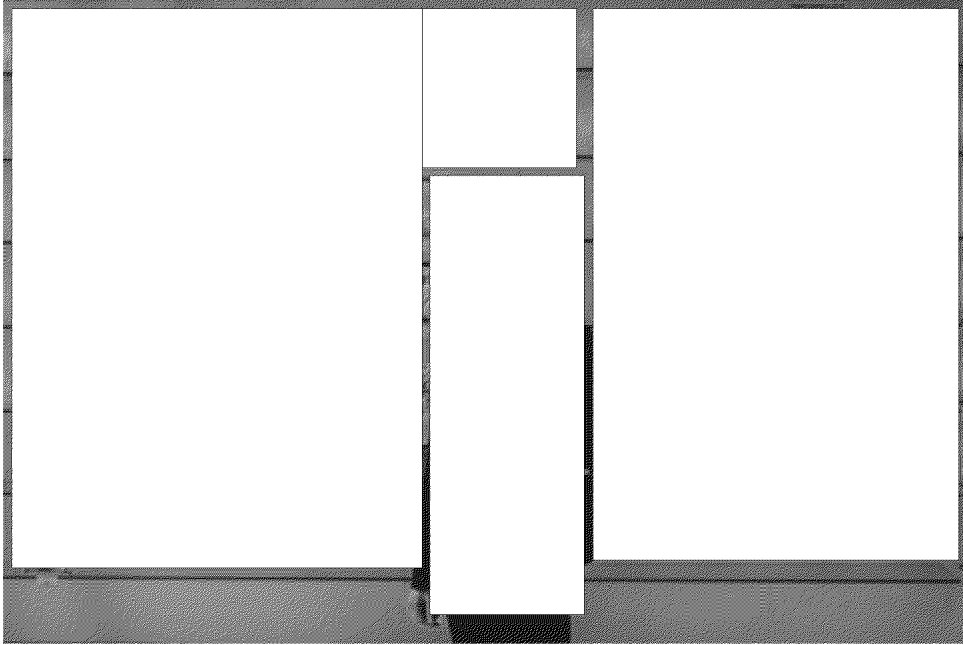
판사 김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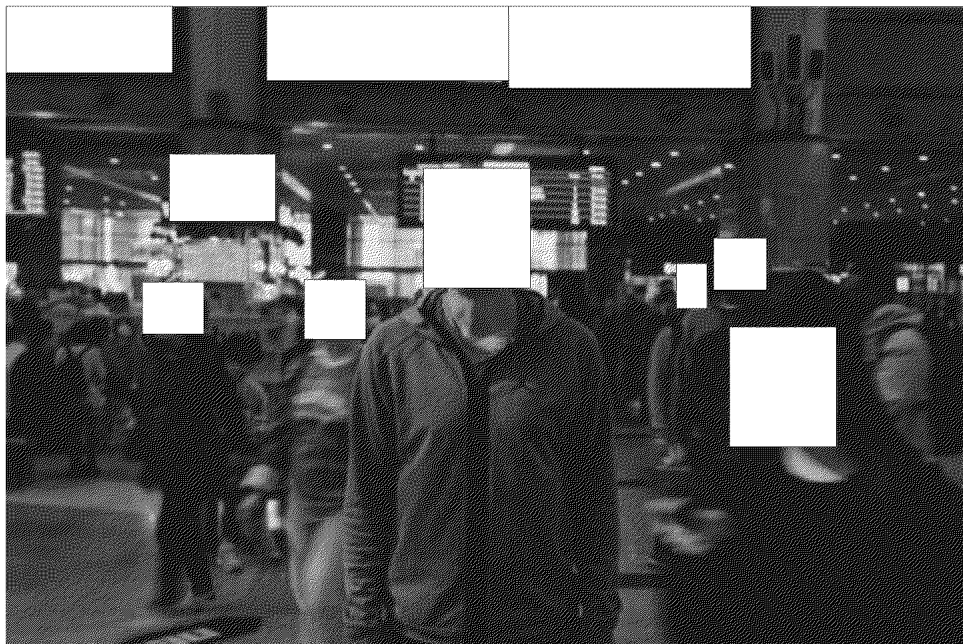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5

[별지 1]

제1항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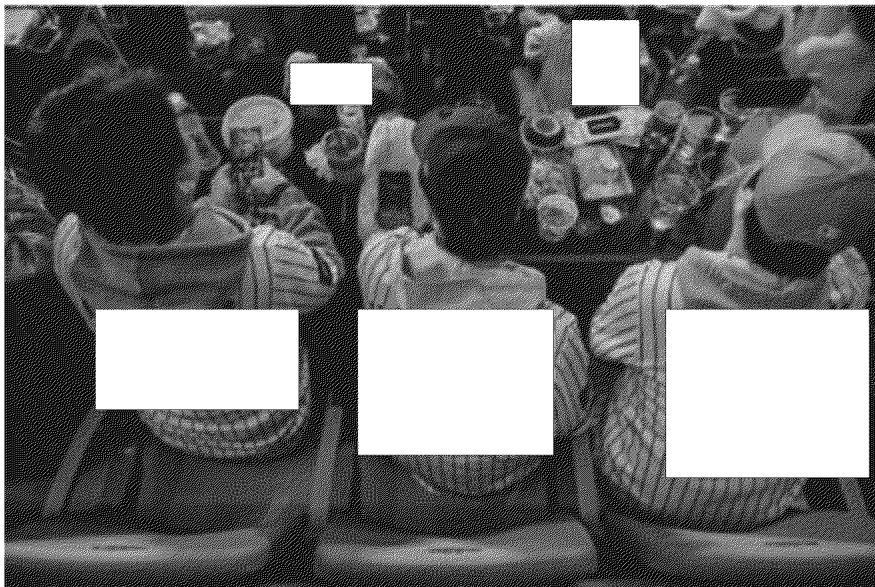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5

제3항



제4항





[별지 2]

[피고 B]

- 제1 사진 사용내역

순번	방송·기사 제목	링크	침해 저작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관련 증거
1	W	(인터넷주소 11 생략)	복제권, 공중송신권	갑 제11-1호증
2	X	(인터넷주소 12 생략)	"	갑 제11-2호증
3	"	(인터넷주소 13 생략)	"	갑 제11-3호증
4	"	(인터넷주소 14 생략)	"	갑 제40-1호증
5	"	(인터넷주소 15 생략)	"	갑 제40-2호증
6	"	(인터넷주소 16 생략)	"	갑 제40-3호증

- 제2 사진 사용내역

순번	방송·기사 제목	링크	침해 저작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관련 증거
1	Y	(인터넷주소 17 생략)	복제권, 공중송신권	갑 제12호증
2	"	(인터넷주소 18 생략)	"	갑 제41-1호증
3	"	(인터넷주소 19 생략)	"	갑 제41-2호증
4	"	(인터넷주소 20 생략)	"	갑 제41-3호증
5	[자막뉴스] 서서히 밝혀지는 전말... N 인터뷰 기사 보니	(인터넷주소 21 생략)	"	갑 제13-1호증
6	"	(인터넷주소 22 생략)	"	갑 제13-2호증
7	"	(인터넷주소 23 생략)	"	갑 제42-1호증
8	"	(인터넷주소 24 생략)	"	갑 제42-2호증
9	"	(인터넷주소 25 생략)	"	갑 제42-3호증
10	"	(인터넷주소 26 생략)	"	갑 제42-4호증
11	W	(인터넷주소 27 생략)	"	갑 제14-1호증
12	"Z"...N 비화	(인터넷주소 28 생략)	"	갑 제14-3호증
13	"	(인터넷주소 29 생략)	"	갑 제43-1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5

14	"	(인터넷주소 30 생략)	"	갑 제43-2호증
15	"	(인터넷주소 31 생략)	"	갑 제43-3호증
16	"	(인터넷주소 32 생략)	"	갑 제43-4호증
17	"	(인터넷주소 33 생략)	"	갑 제43-5호증
18	"	(인터넷주소 34 생략)	"	갑 제43-6호증



[피고 C]

- 제2 사진

순번	방송·기사 제목	링크	침해 저작권·재산권	관련 증거
1	N, 농담으로 감독됐다? “내가 먼저 AA에 제안”		복제권, 공중송신권	갑 제15-1호증
2	“	(인터넷주소 35 생략)	“	갑 제44-1호증
3	“	(인터넷주소 36 생략)	“	갑 제44-2호증
4	“	(인터넷주소 37 생략)	“	갑 제44-3호증
5	어쩌다 감독?...N 농담, 현실로 “내가 먼저 AA에게 감독 제안”	(인터넷주소 38 생략)	“	갑 제15-3호증
6	“AA에 농담으로 말했는데 감독됐다”...N 인터뷰 재조명	(인터넷주소 39 생략)	“	갑 제16-1호증
7	“	(인터넷주소 40 생략)	“	갑 제45-1호증
8	“	(인터넷주소 41 생략)	“	갑 제45-2호증
9	“	(인터넷주소 42 생략)	“	갑 제45-3호증
10	“	(인터넷주소 43 생략)	“	갑 제45-4호증



[피고 D]

- 제2 사진

순번	방송·기사 제목	링크	침해 저작권재산권	관련 증거
1	[스포츠머그] 경찰 수사까지 착수한 선임 과정...말이 엇갈린 AA 회장과 N, '두 절친'의 기억	(인터넷주소 44 생략)	복제권, 공중송신권	갑 제17호증
2	"	(인터넷주소 45 생략)	"	갑 제46-1호증
3	"	(인터넷주소 46 생략)	"	갑 제46-2호증
4	"	(인터넷주소 47 생략)	"	갑 제46-3호증
5	수사까지 착수한 선임 과정...말이 갈린 AA 회장과 N, '두 절친'의 기억	(인터넷주소 48 생략)	"	갑 제46-4호증
6	"	(인터넷주소 49 생략)	"	갑 제46-5호증
7	"	(인터넷주소 50 생략)	"	갑 제46-6호증
8	"	(인터넷주소 51 생략)	"	갑 제46-7호증
9	수사 착수한 'N 선임'..."제2의 N 절대 없다" / 현장영상 위클리	(인터넷주소 52 생략)	"	갑 제46-8호증



[피고 E]

- 제2 사진

순번	방송·기사 제목	링크	침해 저작권 공중송신권	관련 증거
1	AB		복제권, 공중송신권	갑 제18-1호증
2	"감독 찾고 있냐"로 시작?...N 사태 책임 안 지는 AA 회장	(인터넷주소 53 생략)	"	갑 제18-2호증
3	"	(인터넷주소 54 생략)	"	갑 제47-1호증
4	"	(인터넷주소 55 생략)	"	갑 제47-2호증
5	"	(인터넷주소 56 생략)	"	갑 제47-3호증
6	"	(인터넷주소 57 생략)	"	갑 제47-4호증
7	"	(인터넷주소 58 생략)	"	갑 제47-5호증
8	이 시각 헤드라인 [이시각헤드라인]		"	갑 제19-1호증
9	2월 19일 뉴스현장	(인터넷주소 59 생략)	"	갑 제19-2호증
10	AC		"	갑 제20-1호증
11	독일 탐사매체 "N에게 AA 회장은 동맹 같은 존재"	(인터넷주소 60 생략)	"	갑 제20-2호증
12	"	(인터넷주소 61 생략)	"	갑 제20-3호증
13	"	(인터넷주소 62 생략)	"	갑 제48-1호증
14	"	(인터넷주소 63 생략)	"	갑 제48-2호증
15	"	(인터넷주소 64 생략)	"	갑 제48-3호증



[피고 F]

- 제1 사진

순번	방송·기사 제목	링크	침해 저작권재산권	관련 증거
1	AD	(인터넷주소 65 생략)	복제권, 공중송신권	갑 제21-1호증
2	AE	(인터넷주소 66 생략)	복제권, 공중송신권	갑 제21-2호증
3	AD		복제권, 배포권	갑 제21-3호증

[피고 G]

- 제1 사진

순번	방송·기사 제목	링크	침해 저작권재산권	관련 증거
1	"AF" Q회사 R 부회장·AG 탄생 이야기 주목	(인터넷주소 67 생략)	복제권, 공중송신권	갑 제22-1호증
2	"		복제권, 배포권	갑 제22-2호증

- 제3, 4 사진

순번	방송·기사 제목	링크	침해 저작권재산권	관련 증거
1	"전방에 함성 발사!" O언론, 한국 야구 응원 문화 주목	(인터넷주소 68 생략)	복제권, 공중송신권	갑 제34호증



[별지 3]

1.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사진이용회수	손해배상 청구금액
	이 사건 1 사진: 6회 이 사건 2 사진: 19회	2,500만원
	이 사건 2 사진: 12회	1,200만원
	이 사건 2 사진: 9회	900만원
	이 사건 2 사진: 15회	1,500만원
	이 사건 1 사진: 3회	300만원
	이 사건 1 사진: 2회 이 사건 3 사진: 1회 이 사건 4 사진: 1회	400만원

2.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손해배상 청구금액	산청이유
	500만원 ²⁾	1) 침해회수의 과다 2) 이 사건 1 사진의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
	800만원 ³⁾	1) 침해회수의 과다 2) 원고의 성명을 전혀 표시하지 않음
	100만원 ⁴⁾	침해회수의 과다
	1,000만원	침해회수의 과다
	700만원	1) 원고의 성명을 전혀 표시하지 않음 2) 동일성유지권 침해 3) 지면에 의한 침해로 이미 발행된 신문에 대한 회수나 삭제 불가
	800만원	1) 원고의 성명을 전혀 표시하지 않음 2) 이 사건 1 사진의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 3) 여러 장의 사진을 이용 4) 지면에 의한 침해로 이미 발행된 신문에 대한 회수나 삭제 불가